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017년 07월 11일

주식회사 엘아이에스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본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이하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서”)는 2017년 07월 11일(이하 “계약체결일”)에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주식회사 엘아이에스(이하 “발행회사”)는 2017년 07월 10일에 개최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2017년 07월 12일에 발행하는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이하 “본 사채”)에 관하여 현대엠펙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를 인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상 “인수”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사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을 의미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의 인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발행회사,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를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고 칭한다.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 사채를 인수인이 인수함에 있어 발행회사와 인수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확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사채의 발행 및 인수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내용에 따라 본 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인수인에게 아래와 같이 배정하며, 인수인은 인수금액을 납입하여 인수하기로 한다.

| 인수인 | 인수금액 |
|--------------|---------------------------|
| 현대엠펙트너스 주식회사 | 금 [삼십억 (3,000,000,000)] 원 |

제 3 조 사채의 발행 조건 및 내용

본 사채의 발행 조건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채에 관한 일반적 사항

- (1) 발행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엘아이에스
- (2)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엘아이에스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4) 사채의 권면총액: 금 [일백삼십억(13,000,000,000)]원
- (5)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사채 권면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6) 사채의 권종 및 매수: 금 [오억(500,000,000)]원권 [26]매,
- (7) 사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본 사채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금지한다.
- (8) 사채의 이율: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Coupon Rate)는 연 [1.5]%(3개월 후 급)로 하며, 만기보장수익률(YTM)은 연복리 [4.0] % 로 한다.
- (9) 사채의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 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 상환원금잔액에 제8호의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단, 각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때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7년 10월 12일, 2018년 01월 12일, 2018년 04월 12일, 2018년 07월 12일, 2018년 10월 12일, 2019년 01월 12일, 2019년 04월 12일, 2019년 07월 12일, 2019년 10월 12일, 2020년 01월 12일, 2020년 04월 12일, 2020년 07월 12일, 2020년 10월 12일, 2021년 01월 12일, 2021년 04월 12일, 2021년 07월 12일

-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각 권면금액의 [110.7862]%(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때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에게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보유하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서 하여야 하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8호에 따라 조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의 본호에 따른 조기상환일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 (12)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2018년 7월 12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19년 1월 12일)까지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의 조기상환 청구는 사채권자에게 서면통지로 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해당 사채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이전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지급금액: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연복리 [7.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3)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상환 또는 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 [19]%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실제 경과일수를 연 [365]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14) 원리금의 지급장소: 기업은행 평촌지점

(15) 사채의 납입장소: 기업은행 평촌지점

(16) 사채의 납입일: 2017년 07월 12일

(17) 사채의 발행일: 2017년 07월 12일

(18) 사채의 만기일: 2021년 07월 12일

(19) 사채의 발행방법: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본건 사채를 실물로 발행하기로 한다.

(20)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수인은 본 사채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8호의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해 계산된 이자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실제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3호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4)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 5)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6)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 7)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 8)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및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3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단, 본목 및 제7)목의 발행회사 재산의 중요 부분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말하며, 이러한 압류(또는 임의경매 개시)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압류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9)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5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 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10)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거 사채권자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 11)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경우(추정채무제표 등 미래사항의 추정에 대한 자료는 제외한다).
- 12)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여 발행회사에 금 [일십억(1,000,000,000)]원 이상에 상응하는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13) 발행회사가 타회사와 합병(발행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중요한 자산의 양도, 기타 회사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4) 발행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본 사채 발행 후 인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매각하는 경우.
- 1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되거나, 상장 폐지를 위한 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경우 또는 [5]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속으로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 16) 발행회사가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국세, 지방세를 연체하고, [1]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17) 상기 각 목 이외에 발행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 18)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동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해 주어야 한다.

2. 전환권에 관한 사항

- (1) 전환청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전환대상주식**”)
-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매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아래의 전환가액(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을 의미함)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 주는 그 단수 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주식 교부 시에 지급한다.
- (3) 전환가액: 전환대상주식 [1]주로 전환되는 전환가액은 금[일만이천이백(12,200)]월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4) 전환가액의 조정

- 1)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일로 한다.

$$\text{조정 후 전환가액} = \text{조정 전 전환가액} \times \left[\frac{\{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 발행가액} / \text{시가})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right]$$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2)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전환가액 조정사유의 효력발생 직전에 본 사채가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3)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4) 위 제1)목 내지 제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최초 전환가액이 제1)목 내지 제3목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전환가액을 의미한다)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5) 위 제1)목 내지 제4)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7)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조건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5)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날까지로 한다. 단,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6) 전환청구장소 및 절차 : 사채권자는 전환청구서 2통에 본건 전환사채권을 첨부하여 발행회사 본점에 전환을 청구한다.
 - (7) 전환권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 발행회사는 전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주발행의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8) 전환권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 및 상장 : 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발행 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권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을 추가상장하되,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9)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발행회사는 제5호에서 정하는 본건 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사채의 전매

1. 인수인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채의 만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단,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하지 아니한다.
2. 본 사채의 전매 시 본 계약 상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본 사채를 취득하는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1.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장한다.

- (1) 발행회사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 및 자격이 있다. 발행회사는 청산 중에 있거나 파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관리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시되려고 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 (2)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되었으며,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변경, 발행취소 기타 본 계약의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다.
- (3) 본 계약은 발행회사를 적법하게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며,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모든 법률상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 (4)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 및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만한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발행회사에 의한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발행회사의 정관 내용에 위반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한다.
- (5)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본 사채는 적법, 유효하다.
- (6)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래 예상되는 소송 또는 법률상 분쟁으로서 발행회사의 재정상태 혹은 본 계약에 의한 거래관계에 대하여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의 소송 또는 법률상 분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7)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동산, 기계, 차량 및 사무실 기기는 적법하게 발행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발행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8)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례적인 부담을 주는 어떤 협정이나 계약 혹은 기타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러한 협정, 계약 기타 약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9) 발행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나타내고 있고 중요한 채무를 누락하지 않았다.
- (10) 발행회사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영업 및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부 및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인허가 및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
- (11) 발행회사는 채무를 불이행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여 있지 아니하다.

(12)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되지 않았다.

(13) 발행회사는 판결 또는 명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집행선고에 의한 집행 포함)이 행하여지거나 개시된 경우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것(집행정지 혹은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제외)이 없다.

2.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전에 본 계약상 발행회사가 제시한 진술이나 보장이 해당 시점의 상황에 비추어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인수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발행회사의 의무사항

1.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정관 및 내부규칙 등 회사운영에 관한 사항 중 본 계약에 반하는 부분은 납입일 전까지 본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며, 추후 본 계약이 변경되어 정관 및 내부규칙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동 변경사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2.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납입일까지 발행회사의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이사회결의 등 내부적 수권절차 및 제3자의 동의, 승인, 신고, 등기 절차 등을 완료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7 조 선행조건

1. 인수인은 아래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에 대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본 사채를 인수하기로 한다.
 - (1) 제5조에 기재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납입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되고 정확할 것.
 - (2) 본 계약에 따라 납입일까지 이행되어야 할 발행회사의 모든 의무가 이행될 것.
 - (3)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 등 필요한 내부승인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완료될 것.
 - (4) 계약체결일 및 본 사채 발행일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 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본 사채를 인수하더라도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의 정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 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제5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며, 상호 합의 없이는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법원 기타 정부기관(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 한국거래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의 명령이나 법령(정부기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의한 공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 일반조항

1.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본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계약체결일 이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의 체결로 효력을 상실한다.
3.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4.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은 거래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5.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의 주소 또는 번호로 도달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발행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엘아이에스

참조: 손용준 과장

주소: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391번길 14

전화: 070-4900-1340

팩스: 02-552-9939

전자메일: yjson@liser.co.kr

인수인에 대하여: 현대엠파트너스 주식회사\

참조: 고아라 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삼성동, 빌딩엠)

전화: 02-728-8884

팩스: 02-728-8887

전자메일: ara@hdmps.co.kr

6.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관 습 또는 발행회사와 인수인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7.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 1심의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본 계약 당사자간에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7년 07월 11일

발행회사

주식회사 엘아이에스(법인등록번호: 135111-0082861)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391번길 14

대표이사 임 태 원



인수회사

현대엠파트너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12386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삼성동, 빌딩엠)

대표이사 정 몽 일

